

2017년도 진원면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7. 4.(화) ~ 7. 7.(금), 4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4명
- 대상기간 : 2015. 6. 20. ~ 2017. 7월 감사일 현재

2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비 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2	2	20	27/287	2/198	25/89	-	
원 처 분	10	-	10	20/19	-	20/19	-	훈계2 주의3
현지처분	12	2	10	7/268	2/198	5/70	-	

※ 회수 : 공사비 과다 집행,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미부과 및 신청지연 과태료

※ 추징 :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미징수

3 지적사항

원 처 분

1. 사업에 따른 준공검사·물품검수 업무 등 부적정(주의)

- 2015 하반기 진원면 생활민원처리사업(1차) 등 25건
- 물품검수자·준공검사자·공사감독 미임명, 물품검수조서·준공검사조서 누락 7건, 물품검수 및 준공검사 시 입회자 확인누락 8건

2. 수익계약 업무 소홀[주의]

- 2016진원면 생활민원(1차)처리사업 등 12건
- 결의서(계약서) 내용 기재누락, 계약 및 회계 등 첨부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3.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지정 소홀[주의]

- 지출원이 연가 등 사고로 부재중일 경우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인 지정 절차 이행 후 집행하여야 하나 대리인 지정절차없이 부당하게 집행
⇒ 13건 3,259,800원

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2016. 2월 생일 축하선물로 문화상품권을 직접 전달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집행 : 4건 416,000원

5.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 부적정[주의]

- 방한복과 방한화를 각각 4벌과 4켢레 구입하면서 물품검수도 하지 않았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자는 3명인데도 지원요원 1명에게 추가로 지급

6.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주의]

- 2015. 하반기부터 2017. 상반기까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를 과소 및 과다 지급
- 과소지급 : 4명 / 20리터 72매(2015년 하반기 4명 / 72매)
- 과다지급(장기입원자) 5명, 20리터 90매
 - 2015년 하반기 : 1명 / 18매
 - 2016년 상·하반기 : 3명 / 54매
 - 2017년 상반기 : 1명 / 18매

7.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추진 부적정[주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르면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 등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추진해야 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1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

리책임자 미 지정, 관리상태 미점검, 지원시설(장비) 사진대지 누락 등 사후관리 점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지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2013	농산물저온저장고	9명	56,500	25,679	30,821	점검이행
	채소분야사업	66명	880,323	409,590	470,823	
	FTA 과수고품질현대화	1개소	2,126	1,063	1,063	
2014	농산물저온저장고	6명	36,000	16,362	19,638	점검이행
	채소분야사업	64명	989,905	461,319	528,586	
	FTA 과수고품질현대화	4개소	34,209	16,735	17,474	
2015	농산물저온저장고	6명	46,000	20,906	25,094	
	채소분야사업	21명	321,055	147,373	173,682	
	FTA 과수고품질현대화	1개소	5,284	2,471	2,813	
	지속가능한과수육성	16명	130,480	57,651	72,829	
2016	농산물저온저장고	7명	44,000	20,005	23,995	
	채소분야사업	35명	723,040	358,760	387,975	
	FTA 과수고품질현대화	7개소	87,468	42,262	45,196	
	지속가능한과수육성	18개소	117,266	55,259	62,007	
계	15개 사업	261명 (개소)	3,473,656	1,635,435	1,861,996	

8.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징수 소홀[주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수수료가 수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 및 업무처리 : 20건, 19,200원

접수일	수수료 미납자		수수료 미납액	비고
	주 소	성 명		
합 계		20명	19,200	
2015. 7.28	광주 서구 **로 18-19, 000동 0000호	유**	500	500원 수납
2015. 7.30.	광주광역시 북구 **로 000	오**	1,000	
2015. 7.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대로 000-00	이**	1,000	
2015. 7.30.	전남 장성군 진원면 남*길 00-00	이**	1,000	
2015. 7.30.	서울시 서초구 신**로 19길 00	윤**	1,000	

접수일	수수료 미납자		수수료 미납액	비고
	주 소	성 명		
2015. 7.30.	광주광역시 북구 **로 00번길 00	박**	1,000	
2015. 7.3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000-00	이**	1,000	
2015.11.12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원**로 000-0	안**	700	300원 수납
2015.11.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리로 000	양**	1,000	
2015.11.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로 00	양**	1,000	
2015.10. 8	전남 나주시 다시면 ◆**길 000-00	김**	1,000	
2015.10. 8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000-00	윤**	1,000	
2015.10. 8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앙로 000번길	이**	1,000	
2016. 1. 6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대로 000-00	박**	1,000	
2016. 1.13	광주광역시 북구 비***로 00번길 00	정**	1,000	
2016. 1.13	광주광역시 북구 **대로 000	정**	1,000	
2016. 1.13	광주광역시 북구 **로 00-00	정**	1,000	
2016. 1.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로 00	김**	1,000	
2016. 1.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로 00	김**	1,000	
2016. 1.27	광주광역시 광산구 **로00번길 0-00	정**	1,000	

9. 민원 처리 부적정(주의)

- 민원서류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 처리
- 민원 처리 부적정 현황

민원인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기한	처리일자	부적정내용
	계				6건
조**	16.05.02	전입신고	16.05.02	16.05.03	지연처리
이**	16.05.18	전입신고	16.05.18	16.05.19	
서**	16.10.0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6.10.07	16.10.07	결재문서없이 처리
임**	16.10.28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6.10.31	16.10.31	
박**	15.12.2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15.12.21	15.12.22	결재 진행중 완료처리
임**	16.03.2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16.03.22	16.03.22	

10.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수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접수문서 미선람 및 문서미등록, 별도 결재없이 문서처리

【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접수 처리 내역】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수리통지	수리미통지
계	208		208
2015년도	58	-	58
2016년도	87(미선람4)	-	87
2017년도	63(미선람63)	-	63

현 지 처 분

1. 공사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소홀(주의)

- 2015 하반기 진원면 생활민원처리사업(2차) : 111천원
- 2016 진원면 생활민원처리사업(3차) : 87천원

2. 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발급 소홀(주의)

- 2015년 하반기 진원면 생활민원(1차)처리사업 등 2건

3. 이장활동수당 지급일 부적정(주의)

- 2015. 10 ~ 2017. 5월까지 이장활동수당 11건을 읍면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하지 않음

4.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주의)

- 부적정내용 : 아동급식지원은 매월 정해진 기한내에 대상자에게 지원해야 하나 그 기한을 초과하여 아동급식을 지원
- 지원초과기한 : 2015. 7. ~ 2017. 6.
- 아동급식 지원사업 지연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기준	지원인원	지원횟수	지연 지원횟수
합 계			24	14
2015	5일이내	31명	6	3
2016	10일이내	31명	12	7
2017	10일이내	23명	6	4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구입(할인)지원업무 소홀(주의)

- 부적정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양곡은 수급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수매 일반미를 시중판매가격의 10%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장기입원한 자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정부양곡 할인지원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입원자 양곡 과다지급 내역

대 상 자		입원기간	과다지급 기간	과 다 지급량	비 고
주소	성 명				
진원면	김**	2016.11.1. ~ 2017.6.30	2017.1~6.	10kg 6포	2017. 1. 행복e음수신

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주의)

- 학자금 신청시 추가자료 제출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등 미첨부) 및 거주사항, 영농규모 등을 매 분기별 재확인하지 않고 지급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현황

연도별	지급 대상	지 원 금 액(천원)					비 고 (확인여부)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67	63,209	18,182	13,811	13,315	13,095	
2015	28	30,328	7,574	7,876	7,380	7,380	부
2016	21	23,534	5,935	5,935	5,935	5,715	부
2017	18	9,347	4,673	6,696	-	-	여

7.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주의)

- 2015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 미수립 (2016년 정비)
- 농지원부 정비 현황(농업행정시스템)

(단위 : 건)

연도	합 계	소유권 변동처리	임차기간 만료농지	한세대 중복 농지원부 등	정비여부
2015	280	44	190	46	미 정비
2016	634	440	91	103	정비

8. 폐업지원사업 사후관리 미흡[시정]

- 폐업한 농업인 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하는 경우 등 폐업지원금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폐업대상지 현장확인 결과 2016년 시설포도 폐업대상지(나** 농가, 진*리 000-0번지) 전체 과수목이 굴취되어 폐업처리 되었어야 함에도 일부 미 굴취된 포도나무가 발견되는 등 폐업지원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

9.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시정]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신청기간 잘못고지 현황

연번	출생년월	인원	신청기간	발급통지일	통지방법	비 고
계		17명				
1	'98. 09월	3	'15.09.01~'16.09.30	'15.09.07	등기우편	신청기간 잘못고지
2	'98. 10월	1	'15.10.01~'16.10.31	'15.10.07	등기우편	
3	'99. 06월	1	'16.09.01~'17.08.31	'16.08.08	등기우편	
4	'00. 05월	5	'17.05.01~'18.04.30	'17.04.21	등기우편	
5	'00. 06월	4	'17.06.01~'18.05.31	'17.05.22	등기우편	
6	'00. 07월	3	'17.07.01~'18.06.30	'17.06.22	등기우편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과태료 미부과내역

연번	출생년월	성명	신청기간	발급신청일	비 고
1	97.01.20	조**	'14.02.01~'15.01.31	'15.09.11	6개월 이상 경과

-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부과 부적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수수료 미부과	수수료 면제					
			계	훼손	보안기능추가	용모변경	성명변경	사유미기재
계	41	4	37	24	5	1	5	2
2015년도	9	3	6	6			-	-
2016년도	16	-	16	5	5	1	3	2
2017년도	16	1	15	13	-	-	2	-

10. 전출 인감이송기간 미준수(주의)

-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

- 전출 인감이송기간 미준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이 송 현 황			비고
	계	3일 이내	3일 초과	
계	478	346	132	
2015년도	117	56	61	
2016년도	235	164	71	
2017년도	126	126	-	

11.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세외수입 납입 소홀(주의)

- 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
- 세입과목 부적정 : 71건, 2,159,000원
-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지연 납입 : 3건, 91,900원
-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결손금액 증빙자료 미첨부 내역 : 13건, 380,200원
- 증지수수료 지연 납입 및 결손처리 부적정 내역 (단위 : 건, 원)

내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년도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세입과목 부적정	71	2,159,000	-	-	71	2,159,000	-	-	
지연납입	3	91,900	-	-	3	91,900	-	-	
일일결산 소홀	13	380,200	5	148,800	8	231,400	-	-	

12. 민방위대 관리 소홀(주의)

- 민방위대원 편성에 따른 이장 사실확인 및 임무부여 등 통지 소홀

- 민방위대원 편성 현황(2015~2017년) (단위 : 명)

연 도 별	계		통리대		직장대		비고
	대수	대원수	대 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2015년도	8	148	7	133	1	15	
2016년도	8	173	7	154	1	19	
2017년도	6	156	5	139	1	17	

※매년 1월 10일 기준 자료

2017년도 진원면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2건	2	20	27/287	2/198	25/89	
1	원 처 분	사업에 따른 준공검사·물품검수 업무 등 부적정		○				
2		수의계약업무 소홀		○				
3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지정 소홀		○				
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5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 부적정		○				
6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지급 소홀		○				
7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8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징수 소홀		○	20/19		20/19	
9		민원 처리 부적정		○				
10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수리 업무처리 부적정		○				
1	현 지 처 분	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소홀		○	2/198	2/198		
2		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발급 소홀		○				
3		이장활동수당 지급일 부적정		○				
4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		○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구입 지원업무 소홀		○				
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		○				
7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		○				
8		폐업지원사업 사후관리 미흡	○					
9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	○		5/70		5/70	
10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		○				
11		인증기용 증지수수료 세외수입 납입 소홀 및 결산처리 부적정		○				
12		민방위대 관리 소홀		○				

처 분 지 시 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진원면	2017	시 정	회 수		주 의

제목 : 사업에 따른 준공검사·물품검수 업무 등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진원면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2015하반기 진원면 생활민원처리사업(1차)」 등 25건의 사업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각각 계약·착공·준공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검사)의 규정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및 『장성군 물품 관리조례』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9조(물품검사서)에 따르면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하여야 하며 물품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므로 물품납품 완료시 계약담당자는 진원면 재무관의 승인을 득 하여 물품 검수자를 임명하여 사업의 적정 이행여부 및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토록 했어야만 하였다.
- 그런데도 진원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5년 하반기 진원면 생활민원처리사업 관급자재 구입(레미콘) 등 16건에 대하여 물품검사(수) 공무원 임명이 없거나 검수조서를 누락(5건)하고 검수조서에 입회공무원의 서명을 누락(3건)하였으며, 2016년 진원면 생활민원처리사업(1차) 등 9건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지정을 하지 않거나 준공검사조서를 누락(2건)하였고, 준공검사조서에 입회공무원의 서명을 누락(5건)한 채로 대가를 지급하는 등 공사·물품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부적정내용
1	2015하반기 진원면 생활 민원처리사업-관급	2015.10.8	2015.10.8 ~2015.11.20	1,870	(주)한*	물품검수자 미임명
2	2015하반기 진원면 생활 민원처리사업-관급	2015.10.8	2015.10.8. ~2015.10.30	2,064	(주)** 레미콘	물품검수자 미임명
3	2015하반기 진원면 생활 민원처리사업(1차)	2015.10.20	2015.10.20 ~2015.12.4	3,289	(주)** 레미콘	물품검수자 미임명
4	2015하반기 진원면 생활 민원처리사업(3차)	2015.11.18	2015.11.18~ 2015.12.28	5,535	(주)** 레미콘	물품검수자 미임명
5	2016진원면 생활 민원처리사업(1차)-관급	2016.4.22	2016.4.22. ~2016.6.30	4,377	(주)** 레미콘	물품검수 조서 누락
6	2016진원면 생활 민원처리사업(1차)	2016.4.25	2016.4.25 ~2016.6.27	6,250	**토건 (주)	물품검수 조서 누락
7	2016진원면 생활 민원처리사업(1차)-관급	2016.4.22	2016.4.22 ~2016.6.30	3,342	(주)*일	물품검수 조서 누락
8	2016진원면 생활 민원처리사업(2차)	2016.6.14	2016.6.14 ~2016.7.24	9,000	**토건 (주)	감독·준공 검사자 미임명
9	2016진원면 생활 민원처리사업(2차)-관급	2016.6.15	2016.6.15. ~2016.6.22	4,730	(주)** 레미콘	물품검수 조서 누락
10	2016무의탁독거노인주택 개보수사업(최**)	2016.7.8	2016.7.8. ~2016.7.27	3,000	(주)새** 하우징	준공검사 조서누락

연번	사 업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부적정내용
11	2016경로당개보수사업 (산* 2리경로당)	2016.7.8	2016.7.8. ~2016.7.27	2,600	(주)새** 하우징	준공검사 조서누락
12	2016진원면생활민원처리 사업(3차)-관급	2016.11.14	2016.11.14. ~2016.12.23	1,978	(주)** 레이콘	물품검수자 미임명
13	2016진원면청사 수목정비사업	2016.11.21	2016.11.21. ~2016.11.30	2,750	(유)** 조경	준공검사자 미임명
14	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	2016.12.1	2016.12.1. ~2016.12.7	5,238	**가구	물품검수자 미임명
15	청사화단 경계목, 경계블럭 구입	2016.12.20	2016.12.20. ~2016.12.30	3,620	(유)은** 조경개발	물품검수자 미임명
16	2017진원면 ■●리 양유마을농로포장공사	2017.4.17	2017.4.7. ~2017.6.19	5,860	**토건 (주)	준공검사자 미임명, 입회자 확인누락
17	2017진원면 ●□지구배수로 정비 및 진출입로설치공사	2017.4.7	2017.4.7. ~2017.6.19	6,100	**토건 (주)	준공검사자 미임명, 입회자 확인누락
18	2017상림리 ◎▲마을농로 포장공사-관급	2017.4.19	2017.4.19.~ 2017.6.15	3,092	(주)** 레이콘	준공검사자 미임명, 입회자 확인누락
19	2017●□지구배수로정비 및 진출입로설치공사-관급	2017.4.19	2017.4.19. ~2017.6.15	1,484	(주)** 레이콘	물품검수조서 누락
20	진원면 ■□지구배수로 정비및농로복구공사	2017.14.17	2017.4.17. ~2017.6.19	6,960	**토건 (주)	준공검사 입회자 확인누락
21	진원면 농로복구 및 진출입설치공사	2017.4.17	2017.4.17. ~2017.6.19	6,127	**토건 (주)	준공검사 입회자 확인누락
22	●□지구배수로정비 및 진출입로설치공사-관급	2017.4.19	2017.4.19. ~2017.6.15	1,082	(주)한*	물품검수자 미임명, 입회자 확인누락
23	진원면 ●▶리 ◎▲마을 농로포장공사 - 관급	2017.5.17	2017.5.17. ~2017.6.18	2,782	(주)** 레이콘	물품검수자 미임명
24	진원면 농로복구 및 진출입설치공사 - 관급	2017.4.19	2017.4.19. ~2017.6.15	3,153	(주)** 레이콘	물품검수자 미임명, 입회자 확인누락
25	진원면 ◎■지구 배수로 정비 및 농로복구공사 - 관급	2017.4.19	2017.4.19. ~2017.6.15	1,548	(주)** 레이콘	물품검수자 미임명, 입회자 확인누락

[처분지시]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시 물품검수 및 준공검사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
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진원면	2017	주 의			

제목 : 수의계약 업무 소홀

□ 현 황

사업명	업체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비 고
2016진원면 생활민원(1차)처리사업	**토건(주)	6,250	2016.4.25	착공계·준공계·청구서 문서 미등록
2016진원면 생활민원처리사업(2차)	**토건(주)	9,000	2016.6.14	착공계·청구서 문서 미등록
2016진원면생활민원 처리사업(2차) 관급(레미콘)	(주)**레미콘	4,730	2016.6.14	계약보증지급각서등 회계첨부서류 주요내용 기재누락 등
무의탁독거노인 주택개보수사업(채**)	(주)새**하우징	3,000	2016.7.8	준공계등 회계첨부서류 주요내용 기재누락 등
2016진원면생활민원 처리사업(3차) 관급(레미콘)	(주)**레미콘	1,978	2016.11.14	하자보증지급각서등 회계 첨부서류 주요내용 기재누락 등
2016년 경로당개보수 사업(◇◆경로당)	(주)새**하우징	4,000	2016.8.2	계약첨부서류 주요내용기재 누락 등
산■◎리 경로당개보수사업	(주)새**하우징	2,600	2016.7.8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회계서류등기재누락 등
2016년 진원면 생활민원처리사업(4차) 레미콘구입	(주)**레미콘	3,092	2016.12.21	하자보증지급각서등 회계첨부서류 주요내용기재누락등
진원면 ●◆지구 배수로정비 및 진출입로설치공사 관급(레미콘)	(주)**레미콘	1,484	2017.4.19	하자보증각서등 회계첨부서류 주요내용기재누락
진원면 ◆□지구 배수로정비 및 진출입로설치공사 관급(레미콘)	(주)**레미콘	1,548	2017.4.19	하자보증각서등 회계첨부서류 주요내용기재누락 등
2017년 경로당 개보수사업(●△경로당)	(주)새**하우징	5,000	2017.6.5	결의서(계약서)내용 및 첨부서류 주요내용 기재 누락 등
2017년 경로당 개보수사업(◇■경로당)	(주)새**하우징	5,000	2017.5.17	결의서(계약서)내용 및 첨부서류 주요내용 기재누락 등

[위법·부당 내역]

- 계약담당공무원은 『1인 견적 제출대상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 요령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예산 집행품의(내부결재)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방서, 약식도면, 사양서 등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장성군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내지 별표 제50호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하여야 한다.
- 그리고 계약을 할 때 품의서, 견적서, 계약서(결의서), 사업자등록증, 각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특히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별표 제 50호 서식인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1면(앞면)에는 발의, 원인행위부기재, 계약, 적요, 금액 등을 기재하고, 2면(뒷면)에는 공사(용역)명세서 및 승락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나,
- 『2017경로당 개보수사업(◇■경로당)』 등 2건은 계약서(결의서) 2면의 승락사항(착공일자와 준공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락하였고, 특히 계약과 대금지급 등에 제출받는 하자보증각서를 포함한 중요 증빙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주요 내용들이 미 기재되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제출받은 사실이 다수의 계약 건에서 발견되고 있다.
- 또한, 『2016진원면 생활민원(1차)처리사업』 외 1건에서는 착공계·준공계·청구서에 대한 문서등록이 누락됨에 따라 해당공사 실제 준공일자 등 공사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소정의 기한 내 착·준공 및 대금지급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 이밖에도 『●◆2리 경로당개보수사업』의 경우 공사계약 시에는 장성군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50호 서식인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지시]

앞으로는 수의계약 업무 추진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진원면	2017	주 의			훈계, 주의

제목 :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지정 소홀

□ 집행내역

연번	집행일	집행내역	집행액(원)	비고
	계		3,259,800	
1	2015.11.26	사무용품 구입	270,700	
2		2015년 1~3월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급	357,700	
3		관용차량 유류구입	59,250	
4	2016.08.16	관용차량 유류 구입	58,450	
5		진원면사무소 전기요금 납부	409,640	
6		진원면 게이트볼 전기요금 납부	44,870	
7		위성방송 수신료 납부	22,000	
8		남녀화장실 비데사용료 납부	51,800	
9		면정 업무추진을 위한 복사기 토너 구입	154,000	
10		업무추진용 사무용품 드럼 교체	385,000	
11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봉투 구입	88,000	
12		관용차량 유류 구입	58,450	
13		2016년 주민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299,940	

[위법·부당 내역]

-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읍면의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성군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징수관 : 읍·면장

나. 재무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읍·면장

라. 지출원 : 총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바. 수입금출납원 : 읍은 세무업무담당, 면은 총무업무담당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 따라서 회계관계공무원이 연가 등 사고로 부재중일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대리 지정 절차를 이행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진원면에서는 2015년 11월 26일과 2016년 8월 16일 지출원이 대체휴무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인 지정절차 등 이행없이, 사무용품 구입 등 총 13건 3,259,8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지시]

앞으로는 회계관계공무원 부재시 대리인 지정절차 등을 반드시 이행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진원면	2017	주 의			

제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집행내역

연번	지급일자	예산과목	지급내역	금액(원)	비고
계			4건	416,000	
1	2016.07.11	정원가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옐로우시티 티 구입비 지급	150,000	
2	2016.11.10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농특산물 구입	130,000	
3	2016.11.17	“	직원 자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격려	34,000	
4	2016.12.23	“	2016 연말 직원 화합행사 경비집행	102,000	

[위법·부당 내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에 따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 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진원면에서는 생일 축하선물인 문화상품권을 생일날 직접 전달 하는 내용으로 2016년도 직원 생일 축하 계획을 2016년 2월 24일 수립하였다.
- 그런데도 진원면에서는 2016년도 직원 생일 축하 계획과 다르게 4건 416천원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지시]

앞으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진원면	2017	주 의			주 의

제목 :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배부계획』(경관도시과-15415, 2016.11.4.)에 따르면 관리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안내 입간판 정비, 경계표석 설치·보수 및 단속장비 구입 등 경상 경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그런데도 진원면에서는 201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관리자용 방한복 4벌과 방한화 4켢레를 구입하면서 물품 검수도 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자는 3명(면장, 총무담당, 담당자)인데도 지원요원인 직원 1명에게 추가로 피복 및 신발을 지급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표1】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구입처	구입품목	수량	구입금액	물품검수	비고
계			8	1,880		
2016.12.01	(주)첨단***프라자	방한복	4벌	960	무	
2016.12.07	(주)첨단***프라자	방한화	4켢레	920	무	

[처분지시]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진원면	2017	주 의			

제목 :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8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의한 1종 수급자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1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지급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급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현황 및 대상자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급기준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진원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가구별 지원 기준보다 과소 지급하였거나 장기입원 등 거주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다 지급하는 등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수급자 쓰레기봉투 과소 및 과다 지급현황

○ 과소지급

구 분	구 분	성 명	가구원	지급현황(20리터)		미지급 매수 (20리터)	비 고
				적정 매수	지급 매수		
계		4인		108	72	72	
2015	하반기	김*순	2	36	18	18	
2015	하반기	이*용	2	36	18	18	
2015	하반기	오*은	2	36	18	18	
2015	하반기	강*희	2	36	18	18	

○ 과다지급

구 분	구분	성 명	과다지급 매수(20리터)	비 고
계		5명	90	
2015	하반기	윤*현	18	
2016	상반기	정*선	18	
	하반기	노*상	18	
		정*선	18	
2017	상반기	김*수	18	

[처분지시]

앞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진원면	2017	주 의			

제목 :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진원면에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종사자 등의 소득 증대 및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르면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 등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에 대한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런데도 진원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5~2016년도에 진원면 ◆ ◎▲■길 00, 이○○ 등 261명에게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1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책임자 미 지정, 관리상태 미점검, 지원시설(장비) 사진대지 누락 등 사후관리 점검 업무를 일부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표 1】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현황

지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2013	농산물저온저장고	9명	56,500	25,679	30,821	점 이 건 행
	채소분야사업	66명	880,323	409,590	470,823	
	FTA 과수고품질현대화	1개소	2,126	1,063	1,063	
2014	농산물저온저장고	6명	36,000	16,362	19,638	점 이 건 행
	채소분야사업	64명	989,905	461,319	528,586	
	FTA 과수고품질현대화	4개소	34,209	16,735	17,474	
2015	농산물저온저장고	6명	46,000	20,906	25,094	
	채소분야사업	21명	321,055	147,373	173,682	
	FTA 과수고품질현대화	1개소	5,284	2,471	2,813	
	지속가능한과수육성	16명	130,480	57,651	72,829	
2016	농산물저온저장고	7명	44,000	20,005	23,995	
	채소분야사업	35명	723,040	358,760	387,975	
	FTA 과수고품질현대화	7개소	87,468	42,262	45,196	
	지속가능한과수육성	18개소	117,266	55,259	62,007	
계	15개 사업	261명 (개소)	3,473,656	1,635,435	1,861,996	

[처분지시]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3천만원 미만의 기계장비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진원면	2017	시 정	추 정	19,200	

제목 :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징수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진원면에서는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수수료로 일정액을 받고 서류에 확인용으로 붙이는 증서(표)인 장성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시 1천원의 수수료로 수입증지를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진원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로 00-19 유○○ 등 20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수수료가 수납(일부수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실무담당자는 수수료 미납에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미납현황

접수일	수수료 미납자		수수료 미납액	비고
	주 소	성 명		
합 계		20명	19,200	
2015.7.28	광주 서구 ●◆로 00-19, 000동 0000호	유○희	500	500원 수납
2015.7.30.	광주광역시 북구 ▣▽로 000	오○민	1,000	
2015.7.30.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로 000-00	이○근	1,000	
2015.7.30.	전남 장성군 진원면 ▣◀길 00-00	이○숙	1,000	

접수일	수수료 미납자		수수료 미납액	비고
	주 소	성 명		
2015.7.30.	서울시 서초구 신 $\blacksquare$ ▼로 00길 00	윤○홍	1,000	
2015.7.30.	광주광역시 북구 $\blacksquare$ ●로 00번길 00	박○래	1,000	
2015.7.30	광주광역시 광산구 $\blacksquare$ □동 000-00	이○신	1,000	
2015.11.12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odot$ ◆▼로 000-0	안○화	700	300원 수납
2015.11.12	서울특별시 성동구 $\square$ ●리로 000	양○경	1,000	
2015.11.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dot$ $\blacksquare$ 1로 00	양○경	1,000	
2015.10.8	전남 나주시 다시면 $\blacktriangle$ ●**길 000-00	김○정	1,000	
2015.10.8	광주광역시 광산구 $\blacksquare$ □동 000-00	윤○경	1,000	
2015.10.8	광주광역시 광산구 $\blacksquare$ ●중앙로 000번길	이○규	1,000	
2016.1.6.	광주광역시 광산구 $\oplus$ $\blacksquare$ $\blacksquare$ 대로 000-00	박○배	1,000	
2016.1.13	광주광역시 북구 $\blacklozenge$ ●▲▼로 11번길 00	정○규	1,000	
2016.1.13	광주광역시 북구 $\triangle$ ●대로 000	정○기	1,000	
2016.1.13	광주광역시 북구 $\blacksquare$ ●로 00-00	정○용	1,000	
2016.1.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lacksquare$ ●로 00	김○연	1,000	
2016.1.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lacksquare$ ●로 00	김○연	1,000	
2016.1.27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로 0번길 0-00	정○숙	1,000	

[처분지시]

-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미징수분 20명, 19,200원을 추징하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
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진원면	2017	주 의			

제목 :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27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진원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신고 2건에 대해 지연 처리하였으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2건은 결재 문서없이 완료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2건에 대해서는 결재진행 중 실제 처리한 것으로 완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민원 처리 부적정 현황

민원인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기한	처리일자 (결재일자)	부적정내용
계					5건
조*운	16.05.02	전입신고	16.05.02	16.05.03	지연처리
이*지	16.05.18	전입신고	16.05.18	16.05.19	
서*신	16.10.0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6.10.07	16.10.07 (16.10.10)	결재 진행중 완료처리
박*관	15.12.2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15.12.21	15.12.21 (15.12.22)	
임*남	16.03.2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16.03.22	16.03.22 (16.04.15)	

【 처분지시 】

① 민원이 접수된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하게 결재를 득한 후 처리기간 내에 완료 처리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0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문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진원면	2017	주 의			훈 계

제목 :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수리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등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고,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또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진원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서를 접수하여 선람한 이후 결재자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수리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간 중 접수한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 208건에 대하여 수리통지 결재 없이 민원사항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특히, 2016년 12월 27일 이후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접수한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서 67건에 대해서는 문서의 선람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서등록대장에도 등록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접수 처리 내역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수리통지	수리미통지
계	208		208
2015년도	58	-	58
2016년도	87(미선람4)	-	87
2017년도	63(미선람63)	-	63

[처분지시]

①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문서로 접수하여 선람한 이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하게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기간 내에 완료 처리하기 바람,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